

『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연금지급형』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계약은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, 「거치식예금약관」, 「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연금지급형 특약」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, 동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: 「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연금지급형」

■ 상품특징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에 적합한 원금과 이자의 분할이 가능한 정기예금으로,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선택한 연금지급주기 (1,3,6,12개월)에 균등하게 분할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Cash Flow에 따른 자금운용(생활비, 재투자 등)이 가능토록 한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: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중서에 따릅니다.

(2013.12.2 현재, 세전, 연)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 입 대 상 | 퇴직연금사업자 |
| 가 입 기 간 | 5년 이상 50년 이하 연단위 가입 가능 |
| 가 입 금 액 | 1 백만원 이상 |
| 기 본 상 품 | 정기예금 |

<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제도별 적용이자율>

(2013.12.2 기준/ 단위: %)

| 구분 | 운용기간 | DB | DC | IRP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연금지급형 | 6개월 | 최저2.59~최고2.88 | 2.88 | 2.88 |
|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연금지급형 | 1년 | 최저2.75~최고3.05 | 3.05 | 3.05 |
|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연금지급형 | 2년 | 최저3.09~최고3.43 | 3.43 | 3.43 |
|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연금지급형 | 3년 | 최저3.25~최고3.61 | 3.61 | 3.61 |
|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연금지급형 | 4년 | 최저3.34~최고3.71 | 3.71 | 3.71 |
|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연금지급형 | 5년 | 최저3.52~최고3.91 | 3.91 | 3.91 |

※ 예금 신규일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이자율 적용 이후, '매 1년에 해당하는 날'마다 영업점에 고시한 이자율 적용(원금과 이자 재산정)

| 구 분 | | 내 8 | | | |
|--|---|---|---|--|--|
| | 1)중도해지이자을 '예금 신규일' 또는 '매 1 년에 해당하는 날'에 '고객에게 적용된 이자율 -1%' 2)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적용이자을 | | | | |
| | | 특별중도해지 사유 | 중도해지이자율 | | |
| - 무주택 - 가입자 중도해지이자율 경우 - 가입자 따른 회 - 가입자 따른 피 - 그 밖어 | | 사 제 자 지 하 못 되는데 같은 답을」데 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 건을 갖춘 경우 | 신규일 또는 매1년에 해당하는 날 당 시 고시된 이 예금의 이자율 | | |
| 이자지급방식 | 원금과 이자의 균등 지급 방식 | | | | |
| 만기후 이자율 | -1개월 이내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이자율 -1개월 초과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이자율의 1/2 | | | | |
| 분할해지 | 불가 | | | | |
| | 개인형퇴직연금:해당 확정기여형:해당 확정급여형:비해당 |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및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,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| | | |
| 예금자보호여부 | *용어안내 | □ 개인형퇴직연금: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•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□ 확정기여형: 사용자(기업)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 제도 □ 확정급여형: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 | | | |

3 유의사항 : 본 상품은 퇴직연금 운용 대상 전용상품입니다.

이 예금은 하나은행 퇴직연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99-1111 (서비스코드: 예금상담 012)로 연락 바랍니다.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(080-933-1111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hanabank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